

문서번호	감사실-2594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9.04.19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80호

★대리	팀장	감사실장	상임감사	이사장
협 조				

「임직원 행동강령」 등 2개 규정(내규) 일부개정(안)

2019. 4.

「임직원 행동강령」 등 2개 규정(내규) 일부개정(안)

I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일부개정

국민권익위원회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「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」에 반영·시행하고자 함.

※ 기획조정실 심의 및 사규개정예고 완료('19.4.18.)

□ 추진방향

-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통보
- 관련근거 : 공무원 행동강령 '18.12.24. 개정,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'19.1.8. 개정

□ 개정(안) 주요내용

①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범위 조정

(안 제17조 제①항 제2호 및 제4호)

- 금품등 수수 금지의 범위에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 범위 구체화
- 민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 명확화

②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(안 제17조의4)

- 임직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

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(안 제23조의2)

- 임직원이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출장·행사·연수 등과 관련하여 금품등 제공요구를 받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·의전을 요구할시 해당 기관에 통보 등 처리절차 명시

④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(안 제24조 제①항)

-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내용 구체적 명시

⑤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내용 구체화 (안 제29조 제④항 및 제⑤항)

- (금품 등 수수금지) 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·제한
(알선·청탁등 금지) 인사관여, 이권개입, 알선·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금지·제한
(건전한 공직풍토 조성) 공정한 인사 등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
(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)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·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

II 「부패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」 일부개정

국민권익위원회 「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」 수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「부패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」에 반영·시행하고자 함.

※ 기획조정실 심의 완료('19.4.18.)

□ 추진방향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」 수정사항에 따른 내규 반영
- 관련근거 : 권익위 “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관련 업무참고사항 알림” ('18.5.8.)

□ 개정(안) 주요내용

-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시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통지 (안 제7조의2)
-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시 신고자에게 “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” 통지 또는 고지

III 향후 추진일정

- 방침수립 : ~`19. 4. 22.
- 공포의뢰(→기획조정실) : ~`19. 4. 22.
- 공포·시행 : ~`19. 4. 23.

- 붙임 1.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일부개정안 1부.
2.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개정규정 전문 1부.
3. 「부패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」 일부개정안 1부. 끝.